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 (참여연대) People's Solidarity for Participatory Democracy (PSPD)

140-012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 2가 404번지 기원빌딩 4층 대표전화 : 796-8364, Fax : 793-4745, Hitel/Pc-Serve ID : SOPA21

수신 : 각 신문사 사회부 담당 기자
발신 :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보도자료

1. 바른 언론 창달을 위해 노력하시는 귀사에 경의를 표합니다.
2. 요즈음처럼 '사법'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았던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법 100년 역사를 올바로 평가하려는 노력이 상당히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국민들이 미래 사법에 대한 올바른 상을 갖기 위해서는 권력 유지의 도구이자 국민의 참여가 절대적으로 배제되었던 사법의 과거에 대한 역사적 평가가 필요합니다
3. 최근 법원에서 사법 100주년을 맞이하여 '법원사'를 편찬하였습니다. 100년 역사의 성과이자 반성이어야 할 '법원사'가 과연 각계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해 만들어지고 역사적인 청산 과제를 명확히 제시하고 있는가에 대한 국민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4. 이에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에서는 『'법원사' 다시읽기』라는 서평회를 다음과 같이 준비하였습니다.
5. 사법 100년을 되돌아보고 과거에 대한 반성과 명확한 분석 속에서 오늘날 사법의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바쁘시더라도 많은 관심을 보여주시고 참여해 주셔서 사법 100년에 대한 국민적 평가를 이루어 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법원사' 다시읽기

- '법원사'에 대한 서평회 -

일시 : 1995년 5월 15일 (월) 오후 4시

장소 : 참여연대 회의실

발제 : 姜眞哲 (박사, 법학)

朴元淳 (변호사)

토론 : 權純一 (법원행정처 조사심의관)

<별첨> 발제 요지문

발제 요지문

‘법원사’를 읽고

姜眞哲 (법학박사, 강원대 강사)

사법 100주년을 기념하여 법원행정처에서 펴낸 「법원사」에는 현대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법원이 어떠한 길을 걸어 왔는가 하는 것을 기록해 놓고 있다. 그러나 이 책에서는 그간의 법원의 역할이 잘된 것인지 잘못된 것인지 여부에 대한 자신의 평가를 유보시켜 놓고 있어 자기반성의 목소리를 찾아볼 수 없다. 그동안 과거 군사독재정권을 겪으면서 특히 정치재판에서 부당한 정치세력에 의하여 사법권의 독립이 침해된 것과 그로 인해 사법부의 권위와 신뢰가 추락한 것이 사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책은 이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거부하고 있으며, 그리하여 군사정권 시절의 현실인식과 역사의식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이러한 자세는 법원사를 비정치적이고 기술적인 분야로 인식하여 정치적인 측면을 순수법적으로만 조명한 것과 관련이 있다.

또한 이 책에서는 그동안 부당한 정치세력에 대항하면서 국민의 인권보호에 커다란 기여를 한 판결들을 소개하면서 마치 그러한 예외적인 판결들이 통상적인 경우였던 것처럼, 그리하여 법원이 국민의 권익보호에 많은 기여를 한 것처럼 서술하고 있는 사례도 있다. 이는 사실을 왜곡시킬 수도 있는 대목이다.

이 책에서는 문민시대를 맞이하는 사법부의 새로운 각오와 개혁의 자세는 찾아볼 수 없다. 그리하여 이 책은 사법부 특유의 보수적인 시작에 의하여 그간의 선배 법관들의 판결과 행정사무사항을 자기비판 없이 수집해 놓은 법원사료집 정도에 불과하며, 진정한 법원사는 다시 쓰여져야 한다.

법원사 바로 알기

朴元淳 (변호사)

1. 「법원사」 편찬의 의미

근대 사법 100주년에 나온 「법원사」는 큰 의미를 가질 수밖에 없다. 밟든 곱든 이 땅에 국민을 재판해 온 사법부로서 100년을 지탱해 왔기 때문에 그 역사를 정리해 보는 것은 대단한 의미를 가지는 것이다. 그것은 오늘의 사법의 현재와 미래를 전망하기 위한 필수적 과정이기도 하다. 기록 부재의 문화를 가지고 있는 우리 사회에서, 그나마도 공공기관의 기록을 공개하고 공간하며 열람시키지 않은 우리의 문화 풍토에서 사법부의 자료가 함께 정리되고 공간된 것으로서의

의미도 적지 않다.

2. 법원에서 정의를 구하지 말라

“그후 외세의 침략을 받아 나라가 강점 당한 상태에서 식민지 사법의 질곡 아래 고난을 당한 때가 있었고 광복에 이은 국토의 분단이라는 시련을 겪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민족의 자주 독립을 위하여 훌린 선열들의 피와 땀이 있었기에 마침내 우리는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하고 ‘국민의 사법부’로서의 법원을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정부 수립 이후 법원은 격변하는 현정사 속에서도 사법권 독립의 기초를 튼튼히 다져 자유, 평등, 정의의 법치주의 이념이 실현되는 전당이 되고자 노력을 거듭하여 왔습니다. 그 이상이 높으면 높을수록, 법원의 사명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크면 클수록 법관의 고민은 더욱 클 수밖에 없었고 이에 따라 법원도 시련과 진통의 시절을 헤쳐 나가지 않을 수 없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법원행정처장 최종영, 발간사)

우리가 법원사의 첫 페이지를 여는 순간 실망할 수밖에 없는 것은 바로 아무런 참회의 진지한 자세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지난 사법 100년이 이 민족에게 준 것은 회망보다는 슬픔, 자유보다는 질곡, 정의보다는 불의였음을 누가 부정하랴. 사법의 이름 아래 얼마나 많은 이들이 희생되고 자유를 잃었던가. 국민을 보호하라고 준 칼이 오히려 국민을 향해 내려쳐지기가 일쑤였다. 법이라는 이름 아래 의로운 사람들이 조롱 당하고 수난 당하는데 우리의 사법은 기꺼이 그 이름을 내주었다.

결코 추상적인 사법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법관 개인 개인의 용기와 결단으로 사법권을 지켜지고 국민의 기본권은 보호되는 것이다. 위 인용문에서 보면 마치 법원이 ‘시련과 진통’을 겪었고 법원이 그러한 시대의 피해자인 양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정확히 말해서 법원은 가해자이고 피해자는 국민이었다. 그 어려운 시대에서 국민의 개별적 권리와 이익을 지켜 내도록 하는 것이 법원에게 맡겨진 사명을 다하지 못함으로써 국민을 야수적인 정치권력에 내맡겨 보린 죄가 바로 법원에 있다. 그 시대를 탓할 수는 없다. 법원의 사명은 그러한 시대에서의 국민의 권리를 지키는 수문장, 파수꾼의 역할인 것인니까.

우리 국민이 언제 높고 높은 ‘이상’과 크나큰 ‘기대’를 법원에 대해 가졌던가. 국민이 바란 것은 단순히 자신이 서 있을 자리에 서 있어 달라는 주문뿐이었다. 그런데 그 최소한의 본연의 임무마저 내팽개쳐 놓은 것이 바로 이제까지의 사법의 행태였다. 법원에 대한 기대가 컷기 때문에 거기에 부응하지 못했다는 것은 궤변이다.

그 시대 어떤 시인은 노래하였다. “형제여 내 바라나니 서재에서 자유를 노래하지 말라 / 형제여 내 바라나니 학교에서 전리를 구하지 말라 / 형제여 내 바라나니 교회에서 예수를 찾지 말라 / 형제여 바라나니 법정에서 정의를 구하지 말라” (희망에 대하여 2)

“학살의 원흉이 / 지금 육좌에 앉아 있다 / 학살에 치를 떨며 들고 일어선 시민들은 지금 / 죽어 갚더미로 쌓여 있거나 / 감옥에서 피를 흘리고 있다. 당신은 묻겠는가 이게 사실이냐고 / 검사라는 이름의 작자들은 / 권력의 담을 지켜 주는 세파트가 되어 으르렁대고 있다 / 학살에 반대하여 들고 일어선 시민들을 향해 / 판사라는 이름의 작자들은 / 학살의 만행을 정당화시키는 꼭두각시가 되어 / 유죄판결을 내리고 있다 / 불의에 항거하여 정의의 주먹을 치켜든 시민을 향해” (학살 3, 김남주 시집, 나의칼 나의피, 인동)

3. '무죄다'라는 말 한마디

"황변호사가 많은 시국사범의 변론을 맡을 때마다, 그들에게 해 주고 싶은 말은 분명 '너는 무죄다'라는 말 한마디였을 것이다. 그 말 한마디를 자신의 목소리로서가 아니라 법과 정의의 이름으로, 법관의 판결을 통해 들려 줄 수 있기를 바랬을 것이다. 바로 그 말 한마디를 얻어내기 위해서 작은 소리이긴 하지만 절규하는 심정으로 법정에서 변론했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알기로 황변호사의 변론으로 시국 사건 관련자가 무죄를 선고받은 경우는 거의 없었다. 그래서 한때는 "인권변호사가 변론하면 무죄도 유죄가 된다"는 얘기를 자조적으로 할 때도 있었다. 마땅히 무죄로 되어야 함에도 유죄로 귀착되어 버리고 말았을 때, 허탈해 하는 피고를 향해 변호사로서 있는 힘을 다해 할 수 있는 말이 바로, '누가 뭐래도 너는 무죄다'라는 말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말함으로써 '모든 유죄'를 감싸고 양심을 부추기고 분노를 어루만졌던 것이다." (김정남, "무죄라는 말 한마디", 황인철변호사 추모문집, 추모문집간행위원회, 문학과 지성사, 1995. PP.341-342)

그토록 듣고싶었던 '무죄라는 말한마디', 그것을 듣지 못하고 황인철 변호사는 갔다. 수많은 시대의 양심수들을 위해 변론에 나섰던 이른바 '인권변호사'. 그들도 법관과 검사들과 마찬가지로 사법고시를 합격하고 판사와 검사를 지냈던 사람들이었다. 왜 그들은 고난과 무보수의 그 길을 선택했던 것일까. '무죄라는 말한마디'를 듣지 못하고 그 끝없는 사건들의 흥수 속에서 해매었던 것일까. 그들이 법정에서 매번 느꼈을 그 좌절, 그 전망. 그 한탄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조인으로서 검사와 판사들이 저지르는 그 '죄악'에 대한 책임감과 '죄의식'을 대신 지려한 것이었을까.

그러나 이 '법원사'에는 없다. 그러한 책임감과 '죄의식'도 아무 것도 없다. 법원의 책무와 그 책무를 어떻게 수행했는지에 대한 아무런 자체 평가가 없다. 단지 평면적인 서술이 있을 뿐이다.

"이와 같은 훈계와 판결이유의 설명에 대하여는 불필요하고 적절하지 못하다는 부정적인 견해가 있었고 한편으로는 재판장의 소신을 뚜렷하게 밝혔다는 긍정적인 견해가 있었다" (법원사, P862)

부정적인 견해도 있었고 긍정적인 견해도 있었다고 법원사는 곳곳에서 쓰고 있다. 그러면 반반의 잘된 부분도 있었다는 말인가 아니면 당시 긍정적인 면도 있었으나 꼭 잘못된 것은 아니지 않는가 라는 항변인가. 적어도 그 시대, 이재훈 재판장의 훈계는 참으로 '적반하장'이었다.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조용히 그리고 고뇌하는 모습으로 판결을 했다면 그래도 법관의 모습은 유지할 수 있었다. 그런데 스스로 '부도덕한 권력의 앞잡이'라도 되는 듯이 설친 모습을 통하여 우리는 사법의 절망을 또다시 느끼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이 '법원사'는 긍정적인 견해도 부정적인 견해도 있었다니, 도대체 무슨 '소신'이며 '용기'였더란 말인가.

4. '체면 세워 준 판결'로 면책될 수는 없다.

'법원사' 편찬을 소개하는 몇 가지 언론 보도는 우리 법원의 긴 역사 속에서 그래도 홀륭한 몇 분의 판사와 몇 건의 판결을 소개하고 있었다. 김병로 대법원장이나 김홍섭 판사, 이영구 판사 등이 그러한 판사로 꽂힌다. 국가배상법위원회 판결, 다리지 사건, 긴급조치 9호 사건(법원사,

P701) 등이 그러한 판결의 예로 들린다. 우리는 실제 수많은 판사들이 자신의 양심을 지키며 훌륭한 판결을 해 온 사실을 굳이 부정해서는 안된다. 그런 판사와 판결을 가진 우리 국민으로서도 참으로 위안이며 다행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그것으로 우리의 법원이 역사 속에서 무슨 면책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큰 오산이다. 그런 훌륭한 판결을 선고했던 사람들에게 법원의 수익을 받거나 마침내 법복을 벗어던져야 하지 않았던가. 위의 이영구판사는 전주로 전보되었다가 마침내 사직하고 말았다. 누가 그의 인사를 담당했던가. 뿐만 아니라 그렇게 '훌륭한' 판결을 해야 한다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사법의 임무가 아니던가. 몇 건의 예를 들고 법원이 그래도 이런 판결을 하지 않았던가 라고 항변하는 것은 아무래도 설득력이 없다.

우리는 그 몇 분을 통하여 판결 하나로 얼마나 사회에 정의의 등불을 밝힐 수 있었던가를 확인할 수 있다. 그 판결 때문에 또 그 판사는 그 판결이 올곧을 수록 정치권력으로부터의 압력과 편파를 받게 마련이었을 것이다. 그럴수록 우리는 법원이, 그 법관이 그 압력에 휘이고 일그러진 모습을 보면서 실망하고 좌절하였던 것이다.

5. 「법원사」 편찬의 일그러진 잣대

첫째, 전혀 사법의 피해자측 의견과 중언이 빠져 있다. 재판을 통하여 억울하게 형을 선고받았던 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회고록이나 회고담을 남기고 있으나 이러한 중언이 인용되고 있는 경우는 전무하다. 더구나 위에서 보았듯 '인권변호사'들이나 재판 방청자들의 기록들이 적지 않은데 이러한 자료 역시 인용에서 배제되어 있다.

둘째, 인용된 문헌이 법원의 과거 판결을 지지하는 방향의 것들로 편중되어 있다. 예컨대 1986년 10월의 이른바 '건국대 사건'에 대한 평가(법원사, p871), 법정질서에 대한 여론(법원사, p860) 등을 하면서 법원에 유리한 견해를 파악한 조선일보의 사설 등을 인용하고 있다. 반대되는 견해를 실지 않은 것은 물론이다. 한꺼번에 천수백명의 영장을 거의 기각 없이 발부해 버린 법관들을 보면서 법원이 검찰의 '영장담당부서'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그 당시 얼마나 비등했던가! 또한 재판거부와 법정소란이 얼마나 심각한 국민들의 사법 불신에서 초래되었던 것인데 그 배경이나 원인에 대한 아무런 분석 없이 당시 보수적인 언론의 사설 한마디를 인용하고 있는 것은 아무래도 형평 감각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셋째, 지나치게 법원 관계자들의 중언과 자료를 중시하고 있다. 대법원장이나 고위 법관들의 인터뷰들이 주로 실려 있다. 보다 더 다양한 취재원과 의견이 이 '법원사'의 공명정대한 서술에 보탬이 되었어야 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朴 恩 正 드림